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2007.06.30)
및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 (2013)에 관한

상설중재재판소
사건번호 2018-51

엘리엇 어소시엣 엘.피. (미국) (ELLIOTT ASSOCIATES, L.P. (U.S.A.))
(이하 “청구인”)

대한민국
(이하 “피청구국”)

(“청구인” 및 “피청구국”의 집합은 “당사자들”로 칭한다.)

절차 명령 제 1 호

중재판정부

Dr. Veijo Heiskanen (의장중재인)

Mr. Oscar M. Garibaldi

Mr. J. Christopher Thomas QC

사무국

상설중재재판소

2019년 4월 1일

2018년 12월 3일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에게 절차 명령 제1호의 초안을 배포한바,

2019년 3월 22일, 당사자들의 대표 및 대리인, 중재판정부 중재인 전원,
상설중재재판소가 입회하여 제1차 절차회의가 유선으로 개최된 바,

동 절차 명령은 절차 사안에 관한 당사자들의 합의사항을 기록하고, 미 합의된 사안에
관하여 중재판정부가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 및 숙고하여 결정한 사항을 명시한다.

중재판정부는 다음 사항을 명한다:

1. 중재지

- 1.1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중재지는 영국 런던으로 정한다.
- 1.2 심리의 물리적 장소는 당사자들의 협의 후 적절한 시기에 확정한다.

2. 번역 및 통역

- 2.1 약정서 제 8 항 에 따라 당사자가 문서를 영어 및/또는 한국어 번역본과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경우, 상대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한 비공식 번역문은 정확한 것으로 인정한다. 당사자가 번역의 정확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양 당사자들은 필요시 공인번역을 도입하는 것을 포함하여 번역에 관한 합의를 위해 노력한다. 관련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중재판정부가 결정을 내리며, 이를 위해 공인 번역사를 지정할 수 있다.
- 2.2 문서개시 요청 또는 명령에 따라 개시되는 문서는 번역 없이 원래의 언어로 요청당사자에게 개시될 수 있다.
- 2.3 중재재판시 구두변론은 영어 또는 한국어로 이루어질 수 있다. 당사자들이 한국어로의 통역을 생략하기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구두변론은 타 절차언어로 통역이 제공된다. 증인 및 전문가는 선택한 언어로 증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 절차언어로 적절한 통역이 제공된다. 상설중재재판소는 통역사 고용 시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준비한다
- 2.4 각 당사자는 각 서면입장의 번역비용을 부담한다. 중재판정부 또는 상설중재재판소에서 생산하는 문서의 번역비용 및 심리의 통역 비용은 상설중재재판소에 납부된 예납금에서 공제된다.

3. 절차일정표

- 3.1 절차일정표는 당사자들의 협의 후 후속 절차명령에 확정된다.
- 3.2 (아래 4.6 항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당사자들이 기한을 단기간 연장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본래의 기한일 이전에 중재판정부에 이를 고지하고, 의장중재인이 이를 승인하는 경우 가능하다.

4. 제출

- 4.1 모든 서면입장의 제출 최종 기일에 당해 당사자는 전자우편으로 모든 증인진술서, 전문가 보고서 또는 의견서, 증거자료목록, 법적 권한 및 전문가 보고서의 증거자료 (단, 전문가 보고서 관련 증거, 법적 권한 및 증거자료는 제외)를 서면입장과 함께 중재판정부, 상설중재재판소 및 상대 당사자의 대리인에게 송부한다. 전자우편으로 서면입장을 제출한 이후 2 영업일 이내에 당사자는 서면입장과 함께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관련 증거, 법적 권한 및 모든 전문가 보고서 관련 증거자료 등을 안전한 파일공유 플랫폼에 업로드 하는 방식 또는 FTP 링크를 통하여 중재판정부, 상설중재재판소 및 상대당사자의 대리인에게 전자형식으로도 제출한다.
- 4.2 증인진술서 및 전문가 보고서 또는 의견서를 포함한 모든 서면입장은 문서의 서두에 하이퍼링크가 첨부된 목차를 포함하여 전문 문자 검색이 가능한 어도비 휴대용 문서형식 (“PDF”)의 문서파일로 제출한다. 모든 문서(증거자료 및 법적 권한 포함)는 전문 문자 검색이 가능한 PDF 파일로 제출한다.
- 4.3 전자우편으로 서면입장을 제출한 이후 5 일 이내에 당사자는 서면입장 및 모든 부속 문서(법적 권한 제외)의 인쇄 사본을 A4 용지 또는 레터사이즈 용지에 양면 인쇄하여 별도의 자립형 링 바인더에 제본하지 아니한 형태로, 시기순 또는 기타 적절한 순서로 체계화하여, 증거물마다 별도의 탭으로 구분하고, 각 문서의 해당 증거물 번호, 날짜, 제목, 작성인 및 수령인을 명시한 목차를 문서의 서두에 포함하여, 중재판정부, 상설중재재판소 및 상대 당사자의 대리인에게 운반원을 통해 발송한다. (중재판정부 Mr. Thomas 중재인에게 송부하는 증거물은 전자형식으로만 제출한다.) 모든 문서의 사본은 검색이 가능한 PDF 파일로 USB 저장장치를 통해 전자형식으로도 제출한다.
- 4.4 동시 제출하는 문서의 경우, 각 당사자는 모든 전자 및 인쇄 사본을 오직 상설중재재판소에만 제출하며, 상설중재재판소는 당사자들의 문서를 모두 수령하는 즉시 그 사본을 중재판정부 및 각 당사자의 상대 대리인에게 배포한다.
- 4.5 달리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모든 기한은 중재지 기준 최종 기일의 자정으로 정한다.
- 4.6 (가) 당사자가 제출 기한의 준수가 불가한 상황을 인지한 후 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서한을 가능한 조속히 제출하고, (나) 정상 참작의 사유는 부재하나 동 기한 연장이 기 확정된 심리 또는 중재판정부와 관련된 기타 회의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판정부가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승인하거나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5. 문서개시

- 5.1 각 당사자는 중재판정부가 확정 예정인 절차일정표에 따라 상대 당사자에게 문서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 동 요청은 서면으로 하며, 요청하는 문서마다 또는 문서의 분류마다 요청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요청을 받은 당사자는 개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한 준용 가능한 기한 내에 요청된 문서를 개시한다.

- 5.2 당사자의 요청 또는 중재판정부의 명령에 응하여 게시하는 모든 문서는 각 문서별로 고유번호 및 작성 일시를 명시하고, 문자 검색이 가능한 형식의 전자문서로, 어느 요청에 따라 게시하는지를 명시하는 색인을 첨부하여 요청 당사자에게 전송한다.
- 5.3 피요청 당사자가 게시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아래 절차를 적용한다:
- 5.3.1 피요청 당사자는 어느 문서 또는 어느 문서분류의 게시에 이의를 제기하는지 명시한 답변서를 제출한다. 동 답변서는 각 이의제기에 관한 사유를 제시하고, 요청된 문서 대신 게시하고자 하는 문서가 있을 경우 해당 문서를 명시한다.
- 5.3.2 요청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대한 반대 여부를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답변한다.
- 5.3.3 당사자들은 게시요청에 관하여 가능한 최대한의 합의를 추구한다.
- 5.3.4 요청 당사자 및 피요청 당사자 간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당사자들은 미해결된 모든 요청을 중재판정부에 공동 제출하여 그 결정을 구한다.
- 5.3.5 중재판정부의 결정을 구하고자 제출된 문서게시요청서와 각 당사자의 이의제기 및 답변은 동 절차 명령에 **부속서 1** (수정 Redfern 일정)로 첨부된 예시에 따라 '표' 형태로 작성한다. 당사자들은 요청, 이의제기 및 답변 교신 시 동 예시를 사용한다.
- 5.3.6 중재판정부는 이러한 모든 적용사항에 대한 판단을 내리며, 이의 목적으로 *국제중재에서의 증거조사에 관한 국제변호사협회 규칙(2010)*을 참고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가 게시를 명령한 문서는 중재판정부가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는 한, 절차일정표에 명시된 기한을 준수하여 게시된다.
- 5.3.7 당사자가 중재판정부의 문서게시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모든 유관 상황을 고려하여 적합한 추론을 내릴 수 있다.
- 5.4 중재판정부 또한 자진하여 문서게시를 요청할 수 있다.
- 5.5 당사자들은 문서게시 단계에서 상기 제 5.3.4 항에 명시된 시점 또는 문서교환 시점까지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중재판정부 또는 상설중재재판소를 당사자간 교신 시 참조수신자로 지정하지 아니한다.
- 5.6 상기 일정에 따라 게시된 문서는 이후 당사자가 동 문서를 서면입장의 증거물로서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그 이전까지, 또는 문서 교환 이후 중재판정부가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그 이전까지는 정식 기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6. 증거 및 법적 권한

- 6.1 중재판정부는 증거에 관한 판단 시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의 관련 규정 및 상기 문서게시에 관한 규정과 더불어, *국제중재에서의 증거조사에 관한 국제변호사협회 규칙(2010)*을 지침으로 참고할 수 있다.

- 6.2 당사자들은 사실 및 법리 주장 시 의존하고자 하는 모든 증거 및 권한을 서면입장에 첨부하여 제출하며, 이는 증인진술서, 전문가 보고서, 증거물, 관련 문서 및 기타 모든 형식의 증거를 포함한다.
- 6.3 답변 및 회신 시, 당사자들은 직전에 제기된 상대 당사자의 서면입장에 대해 답변 또는 반박하거나 문서개시를 통해 수신한 새로운 증거를 고려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추가적인 증인 증언 서면, 전문가 의견 증언 및 문서자료, 또는 기타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 6.4 동 명령 제 9.4 항에 따라, 당사자들의 답변 및 회신 제출 이후 중재판정부가 예외적인 상황을 근거로 승인을 허가한 경우 외에는,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서면입장의 일부로서 제출하지 아니한 어떠한 증거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한 당사자에게 이러한 예외를 승인한 경우, 상대 당사자 또한 의견을 제시하고 반대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 6.5 당사자들은 중재판정부에 제출하는 각 증거물에 고유의 번호를 부여하여 표시한다. 청구인이 제출하는 각 증거물에는 로마자 “C”로 시작하여 해당하는 숫자로 이어지는 번호를 표시한다 (즉, C-1, C-2, 등). 피청구국이 제출하는 각 증거물에는 로마자 “R”로 시작하여 해당하는 숫자로 이어지는 번호를 표시한다 (즉, R-1, R-2, 등). 당사자들은 전체 중재절차에서 순차적인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 6.6 사실증인의 진술서 또는 전문가 보고서의 경우, 청구인의 증인진술서에는 “CWS-”, 청구인의 전문가 보고서에는 “CER-”, 피청구국의 증인 진술서에는 “RWS-”, 피청구국의 전문가 보고서에는 “RER-” 등 별도의 번호를 적용하고, 이어 해당숫자 및 성명을 표시한다 (즉, CWS-1 [Smith]).
- 6.7 당사자들은 중재판정부에 제출된 법적 권한에 각각 고유의 번호를 부여하여 표시한다. 청구인이 제출한 법적 권한에는 각각 로마자 “CLA”로 시작하여 해당하는 숫자로 이어지는 번호를 표시한다 (즉, CLA-1, CLA-2, 등). 피청구국이 제출한 법적 권한에는 각각 로마자 “RLA”로 시작하여 해당하는 숫자로 이어지는 번호를 표시한다 (즉, RLA-1, RLA-2, 등). 당사자들은 절차가 진행되는 전 과정 동안 순차적인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 6.8 사본 형식으로 제출된 증거 등 중재판정부에 제출된 모든 증거는 당사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동 자료의 진위 또는 완전성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관련 증거를 제출하는 당사자가 어느 문서든 불완전하다고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모두 진본이며 완전한 문서로 간주한다.
- 6.9 엑셀스프레드시트 및 전문가가 산출한 계산은 원본의 전자형식(즉, PDF 대신 엑셀형식)으로 제출한다.
- 6.10 중재판정부가 특별히 인쇄 사본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한 법적 권한은 오직 전자형식으로만 제출한다.

7. 증인

- 7.1 당사자 또는 당사자 소속 임직원 또는 기타 대표를 포함하여 누구든 증인으로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 7.2 각 증인별로 서명을 포함한 서면의 증인진술서를 중재판정부에 제출한다.
- 7.3 각 증인진술서는 최소한 아래 사항들을 포함한다:
- (a) 성명, 생년월일 및 증인의 현 주소
 - (b) 진술서에 기재된 내용 또는 분쟁과 관련한 경우 증인의 직위 및 자격에 관한 기술
 - (c) 증인과 당사자들 및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증인과 중재판정부의 중재인 간 모든 과거 및 현재 관계에 관한 기술
 - (d) 진술내용의 사실 확인
 - (e) 증인이 증언한 사실의 기술 및 해당하는 경우, 증인이 지득한 내용의 출처
 - (f) 증인의 서명.
- 7.4 구술심리에 앞서, 절차일정표에 명시된 기간 내에, 중재판정부 또는 상대 당사자는 당사자가 서면입장과 함께 기 제출한 증인 또는 전문가의 서면증언에 대한 신문 및 반대신문에 응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상대당사자가 반대신문을 하지 아니한 증인의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은 단순히 반대신문 요청이 부재했다는 사유만으로 확인된 사실로 간주되지는 아니한다. 중재판정부가 증인을 신문해야 한다고 확정하지 아니하는 한, 전체 기록과 모든 유관 정황을 참조하여 서면진술의 무게를 평가한다. 반대신문이 증인진술서의 특정 부분에만 국한된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한다. 당사자가 심리에서 중재판정부 또는 상대 당사자의 요청 없이 자체 증인 또는 전문가를 소환하여 신문하고자 하는 경우 중재판정부에 승인을 요청한다.
- 7.5 중재판정부가 증인의 직접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당사자가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을 포기한 경우 이외에는, 자체 증인을 관련 심리절차에 소환할 책임은 당해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 7.6 중재판정부는 자발적으로 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어느 증인이든 소환 가능하다.
- 7.7 중재판정부 또는 상대 당사자가 증언을 위해 소환한 증인 또는 전문가가 심리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동 증인 또는 전문가의 증언은 중재판정부가 불출석 사유가 타당하다고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해당 증언과 함께 제출된 증거와 더불어 기록에서 제외된다. 이 때, 중재판정부는 증인의 증언이 유관하고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동 증인을 재소환할 수 있다.

- 7.8 각 당사자가 소환한 증인의 출석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증인별로 당해 당사자가 부담한다. 중재판정부는 관련 요청이 있을 경우 상기 비용을 적절히 배분하여 최종 판정에 동 결정을 포함한다.
- 7.9 모든 심리에서 증인신문은 아래 절차를 따라 진행된다:
- (a) 의장중재인이 증인에게 주의사항을 안내한다.
 - (b) 증인을 제시하는 당사자는 간단한 직접신문을 진행할 수 있다.
 - (c) 상대 당사자는 이어 반대신문 할 수 있다. 직접신문 및 반대신문의 범위는 증인진술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하되, 증인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으리라고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기록상의 증거에 관하여 상대 당사자가 증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음을 예외로 한다.
 - (d) 증인을 소환한 당사자는 이어 모든 사항 또는 반대신문에서 제기된 사항에 관해 증인을 재신문할 수 있다.
 - (e)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신문 이전, 도중 또는 이후 등 어느 시점에서든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
- 7.10 증인 신문에 관한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전체 심리절차에 대한 통제권은 항상 중재판정부에게 귀속된다.
- 7.11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사실 증인은 동인에 대한 신문에 앞서 주장 청취 및 구두 증언이 진행되는 동안 심리 장소에 출석하거나, 주장 및 기타 증인의 증언에 대해 논하거나, 주장 또는 구두 증언의 기록을 열람하는 것이 불가하다.

8. 전문가

- 8.1 각 당사자는 1 인 또는 그 이상의 전문가의 증거를 보유하고 중재판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
- 8.2 전문가 보고서는 당해 보고서가 의존하는 모든 서류 및 정보를 첨부한다. 단,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입장에 동 서류 또는 정보가 기 제출된 경우는 제외하며, 이 대는 해당 증거물의 참조번호 표시로 대체 가능하다.
- 8.3 증인에 관한 규정은 필요한 수정을 가하여 전문가 증거에 적용하며,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전문가 증인은 언제든지 심리에 출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8.4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 제 27 조에 따라 중재판정부는 자발적으로 또는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1 인 또는 그 이상의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동 전문가 선정 및 관련 위임사항(전문감정료 포함)과 감정결과에 관하여 당사자들과 협의한다. 중재판정부는 관련 요청이 있을 경우, 상기 비용을 적절히 배분하여 최종 판정에 동 결정을 포함한다.

9. 심리

- 9.1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심리 장소, 시간, 일정 및 모든 심리의 기술적, 부수적 사항 전반을 결정한다.
- 9.2 상설중재재판소는 심리내용의 녹음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준비하고 당사자들에게 녹음 기록을 제공한다.
- 9.3 상설중재재판소는 LiveNote 또는 유사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심리내용의 실시간 기록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매 심리기일 말에 당사자들에게 해당일의 심리 기록을 (초안 또는 최종안의 형태로) 제공한다.
- 9.4 (당사자가 새로운 증거의 제출에 대한 승인을 요청한 후, 당해 요청에 대하여 상대 당사자가 관련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주어진 이후에) 중재판정부가 승인하지 아니하는 한, 심리 중에 새로운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불가하다. 모든 당사자는 심리 중 각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및 시연용 증거물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동 자료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아니하되, 이미 기록된 증거를 반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중재판정부가 심리 도중에 당사자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상대 당사자 또한 이를 반박하고자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는 것을 허용한다.

10. 투명성

- 10.1 상설중재재판소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제 11.21 조제 1 항에 명시된 정보 및 문서를 하단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보호정보는 사전 편집하는 조건으로 재판소의 누리집에 게시하여 대중에게 이용 가능하게 한다.
- 10.2 FTA 제 11.21 조제 1 항(c)호에 따라, 대중에게 공개되는 문서는 분쟁 당사자가 중재판정부에 제출한 변론서, 이의제기서면 및 준비서면과 FTA 제 11.20 조제 4 항, 제 11.20 조제 5 항에 따라 제출된 모든 서면입장을 포함하되, 전문가 보고서, 증인진술서, 사실증거물 또는 법적 권한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10.3 FTA 제 11.21 조제 2 항에 따라, 심리는 심리장소의 별도 상영실에서 생방송으로 대중에게 공개되며, 상설중재재판소는 분쟁당사자들 및 중재판정부와 협의하여 적절한 절차적 준비사항을 결정한다. 보호정보로 지정된 내용을 심리에서 다루고자 하는 분쟁당사자는 심리 전에 이를 중재판정부에 고지하여 해당 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가 취해지도록 한다.
- 10.4 용어 “보호정보”는 FTA 제 11.28 조에 명시된 의미를 따르며 당사자가 상업적, 기술적 비밀유지, 또는 특별히 정치적이거나 특정기관에 민감한 사안 (정부 또는 공공국제기관에 의해 기밀로 분류된 정보 포함) 또는 당사자가 제 3 자에 대한 비밀유지의 의무를 근거로 비공개를 지정하여 일반에 공개되지 아니하는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 10.5 FTA 제 11.21 조제 4 항(c)호에 의거, 특정 정보가 보호정보를 구성한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는 보호정보로 주장되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중재판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편집한 문서를 제출한다. FTA 에 의거, 상기대로

편집된 문서만 비분쟁 당사자에게 제공되며, 또는 상기 항목에 따라 일반에 공개된다.

- 10.6 당사자가 상대 당사자의 보호정보 지정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FTA 제 11.21 조제 4 항(d)호에 따라, 편집본을 수령한 후 21 일 이내에 중재판정부의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FTA 제 11.21 조제 4 항(e)호에 따라, 공동위원회의 판단을 구하여 분쟁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결정을 내린다.
- 10.7 중재판정부의 판정, 결정 및 명령에 관하여, 각 당사자는 중재판정부의 판정, 결정 또는 명령을 수령한 후 21 일 이내에 동 문서의 어떠한 부분이든 보호정보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상대 당사자가 그 제안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명령 제 10.6 항에 명시된 절차를 적용한다. 중재판정부는 최종 판정 및 기타 최종 결정과 관련하여 동 조항을 근거로 내리는 모든 명령에 관한 목적으로만 그 권한을 유지한다.

중재지: 영국 런던

Dr. Veijo Heiskanen
(의장중재인)

중재판정부 대표

